

의안번호	2216317
의 퇴 인	오세희 의원
회 답 일	2026. 6. 11.
추 계 번 호	26A043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의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 등 지원)	-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의 실시,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시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4조의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 등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안 제15조 제1항¹⁾ 또는 제16조제1항²⁾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19조제1항·제2항³⁾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인증에

-
- 1) 안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거나 개발·설계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2) 제16조(서비스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단위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3) 안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심사의 일부항목을 면제하거나

필요한 컨설팅의 실시, 시설·장비 공동활용, 시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으려는 광공업품(가공기술 포함)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은 법 제13조⁴⁾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은 2026년 5월 기준 총 12개 기관⁵⁾임
- 인증절차는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공장(사업장 또는 서비스) 심사, 제품시험, 보고서 검토, 인증위원 심사, 인증계약 체결, 인증서 교부 등의 순서로 구성
- 인증심사 비용은 신청 수수료, 공장심사 수수료, 출장비 및 제품시험비 등으로 구성되며 신규 심사 여부, 신청 품목과 소요일수, 사업장 소재지, 제품심사비용 등에 따라 상이
 -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신청수수료는 1품목 당 기본 50만원, 품목 추가시 25만원 추가되며, 공장심사 수수료는 심사원 1인당 하루 32만원으로, 신규 심사의 경우 통상 1품목 기준 심사원 2명이 2일간 진행되어 128만원 소요. 출장비는 인증심사원의 출장 여비가 실비로 청구되며, 제품시험비는 KS 표준에 따른 제품심사 수수료 별도 발생

□ 국가기술표준원의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25.11월)」에 따르면, 한국산업표준 인증 수는 2025년 기준 14,782건으로, 8,681개 공장이 인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8,681개 공장 중 8,390개 공장이 300인 미만 공장이고, 분야별로는 건설(2,925개), 전기(2,245개), 기계(868개) 순

나 정기심사의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4)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후 략>

5)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12개 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키엘연구원(KIEL), 한국가스안전공사(KGS),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 한국에너지공단(KEA), 한국표준협회(KSA), FITI시험연구원(FITI), 한국식품연구원(KFRI), 한국물기술인증원(KWTC), 한국임업진흥원(KOFPI)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인증·심사 비용을 지원하고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인증 등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수와 심사, 컨설팅 등 예상 지원 비용을 비롯한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